

의안번호	2215262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6.2.5.
추계번호	25C7476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960만원, 2030년 960만원 등 총 향후 5년간 총 1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안 제7조)	50	-	-	-	-	50	10
실태조사(안 제14조)	70	-	-	-	-	70	14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 (안 제6조)	9.6	9.6	9.6	9.6	9.6	48	9.6
합 계	129.6	9.6	9.6	9.6	9.6	168	33.6

주: 1. 본 추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들의 의견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사업의 규모, 운영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의 책무)	○ 국가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 시험법협의체를 운영함(제1항) ○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중에서 협의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함(제3항) ○ 협의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대로 운영하며, 기관별 운영주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제4항)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3	안 제7조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 협력을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 (동물대체시험법 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협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0조 (동물대체시험법 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1.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2. 산업계·학계,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3. 그 밖에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학계,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2조 (국제협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동물용의약품국제기술조정위원회(VICH)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3조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농림축산 분야 검증센터 - 화학물질 분야 검증센터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검증센터 - 농약, 사료 등 농업 분야 검증센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검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증센터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9	안 제14조 (실태조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5조 (동물대체시험법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공유 및 정보체계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적 분석을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2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의 책무)	×	○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7조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9조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	×	○ 동물대체시험 소관 중앙행정기관¹⁾에 따르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 개발 활성화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이미 추진 중에 있음 ○ 제정안에 따라 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이를 객관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별 2025년 기준 연구개발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농림축산식품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개 과제 수행에 47.72억원 투입²⁾ - (농촌진흥청)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개 과제 수행에 39.32억원 투입³⁾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R&D)”,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R&D)”에 각각 68.42억원, 1.34억원 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와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기반 구축”에 각각 100억원, 2억 6,400만원을 배정하여 추진 중
5	안 제10조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6	안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	○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 다만,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환경부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인턴십)이나 동물대체시험 기술교육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대상이 되는 소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
7	안 제12조 (국제협력)		
8	안 제13조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	○ 동 조문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증센터의 명칭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NAM)로 일치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1)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지정·지정취소·평가·보고 등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4조 (실태조사)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0	안 제15조 (동물대체시험법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 제정안은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업무 위임·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11	안 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안 제6조)”, “기본계획(안 제7조)”, “실태조사(안 제14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을 말하며, 소관 중앙 행정기관과 그 소관 분야는 아래와 같음
(안 제2조제3호)

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

나. 환경부 :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등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

2) 이 중 “동물용 의약품의 시험관내 흡입독성 시험법 표준화 연구”(3억원)는 2024년부터 2026년, “동물용 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및 GLP 규정의 국제 조화를 위한 조사 연구”(2억원)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연속과제임

3) 2025년 기준, 농촌진흥청은 총 3건의 다년도 농약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신농약 개발을 위한 독성 예측 평가 기술 연구”(25.32억원)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행되는 5개년 과제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본계획(안 제7조)·실태조사(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계 첫해에 각각의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관의 기존 경비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가정
 - －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경우 「동물보호법」, 「동약관리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하여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에 각각 5,000만원,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000만원으로 5년간 총 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기본계획, 실태조사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안 제7조)	50	—	—	—	—	50
실태조사(안 제14조)	70	—	—	—	—	70
합계	120	—	—	—	—	1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사례와 기획재정부 지침을 참고하여 추계
 - － 제정안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6조제 3항에 따라 14인의 공무원⁴⁾을 제외한 총 16인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에 따라 연 3회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⁵⁾을 참고하여 회당 20만원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일정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960만원 등 5년간 총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 (안 제6조)	9.6	9.6	9.6	9.6	9.6	48	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4) 안 제6조제3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므로 각 기관별로 1인씩 임명할 경우 총 14명이 해당됨

5)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